

의견은 없습니다.

- 4. 질의·답변 : 생략
- 5. 심사결과

○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8명 전원 일치)

- 6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- 1.시정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
- 2.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
- 3.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- 4.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
- 5.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이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

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등 개혁방안 구체화
- 2.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
- 3.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 검토

제6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조사·연구의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